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양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1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제안 경위

-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7.
- (3) 회 부 일 : 2025. 6.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함.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양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입양인들의 알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으로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정임.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희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된 바 있음.

이에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4항·제5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입양인이 입양정보 공개 청구 시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 사망 시 등에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입양정보의 공개결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 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 의 여부가 <u>확인되지 아니하거 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u> ③ 제2항에도-----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에는-----

-----공
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결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

-----.

2.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각각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국내입양 및 국제입양 전반에 관하여 공적 관리 체계가 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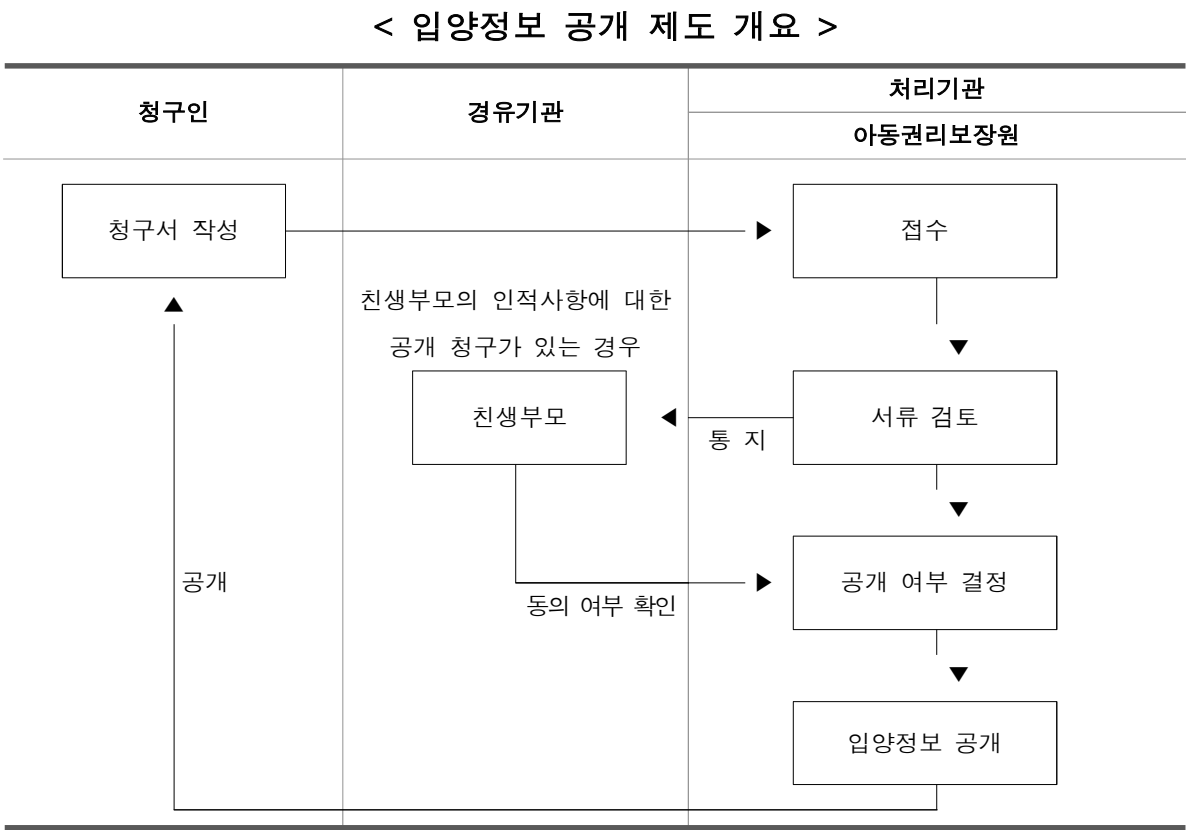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보면,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사후서비스의 제공 주체도 입양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양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사후관리 서비스 주체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와 양자를 결연하고, 중앙 당국 간 협의를 거치게 하면서 역시 사후관리 서비스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등 국가적으로 입양체계를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개편되었음.

□ 한편, 입양정보공개 규정은 종전 「입양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바, 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¹⁾ 비동의 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

1) 이 내용은 종전 「입양특례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새로 추가된 내용임.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자료: 보건복지부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총 청구 건수 9,461건 중 정보 오류·미비 등으로 소재지 조회가 불가능한 2,162건 (22.9%)를 제외하고, 친생부모 정보를 포함한 소재지가 조회된 4,506건²⁾ 중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808건으로 40.1%에 달하는바, 이 중에는 친생부모 본인이 통지를 받고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입양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됨.

2) 소재지 조회 완료 총계는 6,668건으로 조회 성공 건수(4,506건)와 조회 불가 건수(2,162건)를 합한 건수임.

< 2021~2024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 >

(단위: 건)

연도	총 청구 건수	친생부모 정보 포함 요청-소재지 조회(진행완료)							친생 부모 정보 없음 (기아)	소재 지 조회 미 요청	진행 중
		조회 완료 총계	소재지 조회성공					소재 지 조회 불가			
			소계	공개 동의	공개 거부	사망	확인 불가				
2021	1,327 (100%)	1,158 (87.3%)	833 (62.8%)	298 (22.5%)	535 (40.3%)			325 (24.5%)	160 (121%)	9 (0.7 %)	-
				상봉 15	125	90	320				
					(9.4%)	(6.8%)	(24.1%)				
2022	2,043 (100%)	1,430 (70.0%)	960 (46.99%)	319 (15.6%)	641(31.4%)			470 (23%)	200 (9.8%)	413 (20. 2%)	-
				상봉 42	128	142	371				
					(6.3%)	(7.0%)	(18.1%)				
2023	2,717 (100%)	1,924 (70.8%)	1,259 (46.3%)	391 (14.4%)	868 (32%)			665 (24.5%)	243 (8.9%)	548 (20. 2%)	2 (0.1%)
				상봉 215	171	160	537				
					(6.3%)	(5.9%)	(19.7%)				
2024	3,374 (100%)	2,156 (63.4%)	1,454 (43.1%)	450 (13.3%)	1,004 (29.8%)			702 (20.8%)	358 (10.6%)	782 (23. 2%)	78 (2.3%)
				상봉 259	204	220	580				
					(6.0%)	(6.5%)	(17.2%)				
합계	9,461 (100%)	6,668 (70.5%)	4,506 (47.6%)	1,458 (15.4%)	3,048			2,162 (22.9%)	961 (10.2%)	1,752 (18.5 %)	80 (0.8%)
				상봉 531	628	612	1,808				
					(6.6%)	(6.5%)	(19.1%)				

※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수기 취합

* 소재지 조회 미요청: 친생부모 정보 미비, 입양서류상 친생부모 이미 사망으로 확인, 친생부모 이미 찾을 등의 사유로 입양인 요청에 따라 소재지 파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종전 「입양특례법」에서는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법률」과 달리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외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해외 입양인이

회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음³⁾.

□ 이는 친생부모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등 보호를 명목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이에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 행정법원에 의하여 종전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⁴⁾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2025헌가13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등 위헌제청).

□ 참고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갖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제7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양인의 정보공개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친생부모에게도 공개 거부·연락 거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법원이 중개인을 지정하여 친가족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3) 연합뉴스 2025. 3. 17. 기사 “국가가 보낸 입양아 죽어가는데…국가 수수방관, 말이 되나요” 등 참조

4) **종전(2025. 7. 19. 이전)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생략)

< 입양정보공개 관련 법령 >

국가	청구자격 (식별정보 기준)	제공사항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국	○ (성인 입양인)	○ 1)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 입양인의 출생에 관한 정보 :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 입양인의 입양 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 (인적사항 항목 존재)	△ (입양 배경에 관한 항목 존재)
미국	○ (성인 입양인, 친생부모, 친생가족 등)	○ 식별 및 비식별정보, (의학정보 포함), 관련 서류	○	○
호주	○ (성인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친생가족 등)		○	○
캐나다	○ (성인 입양인, 친생부모, 친생가족 등)		○	○

< 입양정보공개 관련 제도 >

국가	공개거부권	기밀중개제도	연락 거부/선호권	입양정보등록시스템
한국	X	X	X	X
미국	○	○	○	○
호주	○	X	○	○
캐나다	○	X	○	○

* (공개거부권) 친생부모 및 입양인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공개 거부권 제도

* (기밀중개제도) 법원에 기밀 중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원이 공인 기밀 중개인을 지정하여 비공개 입양 서류에 접근하고 친가족 등을 찾아 상봉을 지원

* (연락 거부/선호권) 정보는 공개되지만 이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면 연락 거부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호하는 연락 방법이 있는 경우 연락 선택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양정보등록시스템) 입양정보등록시스템에 상호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공개에 동의 한 경우 식별정보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 공개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안 제33조제2항 단서),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⁵⁾이나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권⁶⁾으로서, 오히려 친생부모의 입양에 관한 낙인을 우려한 유기 등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기간 도과로 일률적으로 동의로 간주하기보다는 ‘친생부모가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안 제33조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그 외, 안 제33조제4항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로 수정이 필요하겠음.

5)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 정보의 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짐(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등)

□ 한편, 안 제33조제5항에서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 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입양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에 대한 입양정보의 공개결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새로운 재판 유형을 창설하려는 것이므로 법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가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개 결정’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나 친생부모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생부모가 입양정보공개 동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동의로 간주할 필요가 있고,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안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의료상 목적이 있는 경우 필수적 공개’를 제3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입양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작성된 입양기록상 친생부모의 정보 미비로 신원 확인 및 소재지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여 이와 같이 친생부모의 동의의사 확인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보 공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입양인의 알 권리 확대 보장 취지에 공감하나, 친생부모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친생부모가 입양정보공개 동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동의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동의로 간주할 필요 · 입양인의 의료상 필요가 있으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명시할 필요 ·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 판단 신설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 필요
아동권리보장원	· (안 제33조제2항 관련) 개인휴대전화번호 확보를 통한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를 개별적·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일정 기한 초과 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 · (안 제33조제3항 관련)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입양인의 의료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공개하도록 확대 필요
전국입양가족연대	· (안 제33조제2항 관련) 아동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경우,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기 임신부가 낙태와 유기 선택 우려가 있고, 아동의 알 권리가 아동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 · (안 제33조제3항 관련)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매우 다양할 수 있기에, '의식불명 등 사망과 유사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필요. 또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⁷⁾에도 규정된 것이므로 「입양특례법」에서만 삭제할 경우 충돌 문제 발생 · (안 제33조제5항 관련) 법원이 친생부모의 의사와 상반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입양특례법」의 다른 규정과 모순·충돌되기에 삭제될 필요
국내입양인연대	·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망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친생부모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제공될 필요

문 의 처

02) 6788-5500

7)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